

레미콘 운전자로서 알아야 할 교통 법규

—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에 따른 벌점, 면허정지, 취소에 대하여 —

강사 宋 南 起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

I. 서 론

우리나라는 '92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627만대를 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가 1,300만명으로 운전면허소지자 2명에 1대의 자동차가 그리고 인구 7명에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받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과 면허 정지, 심지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교통법규를 잘 알았다고 할 지라도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법규도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다가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되어 당황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대해 벌점을 받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 요강이 '94년 1월 1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벌점제도와 면허정지 면허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벌점제도의 도입 배경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켜 교통현장에서 일정 기간 배제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교육 등을 통하여 그 운전자의 위험성을 제거시킨 후 다시 교통현장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

벌점제도는 이러한 운전자의 위험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제도로 1947년 미국 커네티컷주(Conneticut洲)

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미국 전 지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9년 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벌점제도는 개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할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일지라도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장래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보고 그 운전자를 교통 현장으로부터 격리하여 개선, 교육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별 예방적 기능과 개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을 미리 정해 놓고 면허정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요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벌점 부과 기준

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입건, 즉결심판 회부 또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등을 받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항목과 벌점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지방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표 1>과 같은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부과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 기준

(1) 교통사고 야기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 사고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 기준은 <표 2>와 같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①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그 중 무거운 벌점만을 적용한다.
- ②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 ③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 일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④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 ⑤ 물적 피해에 있어서 10만원 미만의 피해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물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50점을 넘지 못한다.
- ⑥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차 및 화물의 피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 기준으로는 <표 3>과 같다.

즉 교통사고 즉시 (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고속도로, 서울 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이 내에 자진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를 하였을 때,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점에서 6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표 1>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개별기준

(1) 통고처분 항목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내 용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제5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의 신호 또는 경찰관(보조자 포함)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교차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이 있을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은 때.
2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2조 ③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의 중앙우측을 통행하지 아니한 때 (직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2-2	통행구분위반(보도통행·제1항 단서에 의한 보행자 통행 방법에 한함.)	제12조 ① ②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 단서에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3	차선위반(진로변경 금지위반 포함)	제13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때 도로중앙 우측에 2이상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 위반하였을 때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때
4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제13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속도 및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때
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급제동 포함)	제17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방향 진행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를 급정지하거나 그 속도를 급속히 감속하는 행위(위험방지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치 아니한 때 ◦ 자동차를 급정거하거나 그 속도를 급속히 감속하는 행위(위험방지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6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19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의 좌측이 아닌 방향을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한 때 ◦ 대면 교통 및 전방교통에도 주의하여 도로의 상황 및 속도에 따라 경음기 사용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지 아니한 때
7	앞지르기금지 위반	제20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와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앞지르는 행위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는 행위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 정상, 급경사의 내리막 및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앞지르는 행위 ◦ 법령규정과 경찰관과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는 행위
8	보행과 보호의무 불이행	제24조 제48조 제 3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 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8-2	승객의 추락 방지 등 안전 조치 위반	제48조 제 5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의 추락 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9	주차 위반	제28조 제29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주차장소에서 주차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측단,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정류소 표지(주 표시금)로부터 10미터 이내 • 철길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 그 밖에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 다음 주차장소에서 주차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소화전·소화용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판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내 용
		<p>제30조</p> <p>제3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 터널안 및 다리위 • 도로공사장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지 아니한 때. 다만, 차도·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50센치미터의 거리를 두지 않은 때 ○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에 불응한 때
10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제44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의식하는 과실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난폭운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입(급차선 변경) • 지그자그 운전시 •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 때. ○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과 도로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운전조작을 과실로 이행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한 운전을 한 때.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11	통행방법 위반	제56조 ①	30	○ 갓길 통행금지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한 때
12	적성검사기간 경과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0 120	○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기간 경과 1년이내인 때(적검기간1월이 내는 10점을 부여하고 적검기간 1월 초과시마다 10점씩 가산)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형사입건	제41조 ①	100	○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 음주하고 운전 하였을 때
1-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제78조	90	○ 단속한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때
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99조 제120조	40	○ 출석지시서에 의한 출석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때.
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77조 ②	30	○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한 때.

<표 2> 교통사고 야기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 적 통 피 사 해 고	사망 1명마다	45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물적피해 교통사고	10만원마다	1 (최고50점)	허가된 정비공장의 견적에 의한 피해금액 (차·화물의 피해금액)

<표 3>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위 반 항 목	벌 점	적용범조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등)불이행	자연자진신고	60점
	시한내자진신고	30점
	물적피해사고	15점
		제50조①

-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객 :
운전자 : 전치 3주
승 객 : 전치 1주

- 피해차량 : 물적피해 : 150만원

[해설]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사이거리 미확보의 책임으로 10점의 벌점과 피해차량의 인적피해(운전자 : 전치 3주는 중상으로 15점, 승객 : 전치 1주는 경상으로 5점) 20점과 물적피해(견적 150만원)15점 중 중한 벌점인 인적피해 20점을 합산하여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정지도 30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정교육을 받고 시험성적이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20일,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는 15일,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10일간 감경 혜택을 받아 면허정지 일수는 감경받게 되지만 누산 점수는 3년간 30점으로 관리가 된다.

다.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 합산 기준.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벌점을 순차적으로 모두 합산한다.

- ① 법규 위반 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② 교통사고 야기시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경합될 경우 그 중 무거운 벌점만을 적용한다.)
- ③ 교통사고 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사례 1]

94. 2. 10. 신호 대기중 정지하고 있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가해 차량 : 추돌한 차량
- 피해 차량 : 추돌을 당한 차량(승용차)
피해 : • 가해차량 운전자 : 전치 4주
• 가해차량 물적피해 : 250만원

[사례 2]

레미콘 운전자인 K씨는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였다가 3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승용차의 견적은 400만원임)

[해설]

레미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30점을 받게 되고 사고 결과에 따라서는 인적 피해사망 1명으로 45점과 물적피해 40점 중 중한 벌점인 45점, 그리고 사고 야기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3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시한 내 자진 신고의 30점을 합산하여 모두 10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앞으로 1년 이내에 16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어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기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3. 벌점의 종합 관리

가. 벌점의 면허대장 등록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입건, 즉심, 통고처분등을 하고 그 위반 행위가 벌점 항목에도 해당될 때에는 벌점 등록자료표(위반)를 작성하여 전산 입력하게 되고 교통사고조사 경찰관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리와 동시에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등록자료표(사고)를 작성하여 전산 입력케 되므로 운전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경찰청 전산실에 있는 운전자 개개인의 면허대장(카드)에 벌점이 차례 차례 누산된다.

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운전면허 벌점이 면허대장에 입력되면 어떻게 관리되어 면허의 정지와 취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한다.

① 누산점수

「누산점수」란 위반 또는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

를 말한다.

그러나 <표 1>의 (1) 통고처분항목 12.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점(적검 기간 1월 이내는 10점, 1월 초과시마다 10점씩 가산하여 최고 120점)과 (2) 즉심회부(형사입건포함)항목 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합한 30일이 경과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 경과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부여하는 벌점(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만을 집행한다. (94. 1. 1. 부터 90점을 40점으로 낮추었음)

누산점수는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을 부과받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부과받은 벌점은 상계되지 않는 한 계속 누적하여 3년간 관리를 한다.

② 처분벌점

「처분벌점」이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즉,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을 말한다.

[사례 3]

고속도로 갓길운행으로 3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집행을 완료한 후 다시 1개월만에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해설]

누산점수는 15점이 더 추가되어 45점이 되지만 처분벌점은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고속도로 갓길운행 벌점의 30점은 빼게되어 15점이 된다. 이 15점이 추후 위반이나 사고가 생

겨 다음번 정지처분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별점이 되는 것이다.

다.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별점의 소멸

처분별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 부터 위반 또는 사고 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별점을 소멸시키고 누산점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1년간, 사고나 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다.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가. 운전면허의 취소

<표 4>와 같은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에

<표 4>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 점	내 용
1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78조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41조 제78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1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78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제78조	취소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취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적성검사(수시작성 검사 포함)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 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78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	제78조	취소	○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한 때 (고의과실 불문)
9-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제78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	산림법 제94조 하천법 제25조의 3	취소 취소	○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는 단 1회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 5>와 같은 벌점 또는 누산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표 5>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년간	121점 이상
2 년간	201점 이상
3 년간	271점 이상

[사례 4]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망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경우

[해설]

주취의 한계인 0.05%를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였으므로 <표 4>의 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사례 5]

'90. 5. 6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90. 5. 30에 주차위반, '90. 6. 25에 신호위반, '90. 11. 30에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각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후 '90. 12. 24에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받은 경우

[해설]

주차위반 10점, 신호위반 15점, 음주운전 100점, 총 125점으로 최종 위반일인 '90. 12.



24.로 부터 기산하여 1년간의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으므로 면허취소대상이 된다.(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벌점부과 항목이 아니므로 처분벌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 운전면허의 정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 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한다.

특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신고를 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 기간내 납부치 않고 즉결심판을 60일 이내에 받지 아니한 때, 중앙선 침범, 면허증 제시 불응,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의 항목은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3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어 처분벌점이 0점이었던 운전자도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사례 6]

K씨는 '91. 11. 1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91. 12. 6에 앞지르기 금지 위반, '92. 2. 13에 차선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고, '92. 12. 25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으로 단속받았다. 그 후 '94. 2. 10에 과속(매시 20km 초과)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상태에 다시 '94. 12. 20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았을 경우

[해설]

K씨는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차선 위반 10점으로 합계 25점일 때까지는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92. 12. 25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을 때까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지냈으므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차선 위반으로 인한 벌점 25점은 '92. 12. 5.에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에서 소멸된다.

따라서 '92. 12. 25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만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이 종료된 후 누산점수는 100점, 처분벌점은 0점인 상태에서 '94. 2. 10. 과속으로 단속되었으므로 15점의 벌점이 산입되며 '94. 12. 20.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산입되면 결국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이상이 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례 7]

C는 '92. 10. 1.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바쁘게 생활하다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도 받지 아니하다가 9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2명, 경상 1명의 피해와 물적 피해 600만원의 견적이 나왔을 때의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가?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92년은 벌점 90점이 부과되어 9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94. 1. 1. 부터 40점으로 낮춤)이 경우의 벌점은 누산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C는 중앙선침범 30점과 인적피해(중상 2명은 30점, 경상 1명은 5점 모두 35점)와 물적피해(견적 600만원은 60점이지만 최고 50점까지만 산입하기 때문에 50점)중 중한 점수인 물적피해 50점을 합하여 8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9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10일 더 추가되는 것은 다음에 기술하는 가중처벌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특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운

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을 '92년 3월 15일 개정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는 면허정지로 대체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운전자에게만 면허를 취소한다.

즉,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10점의 별점을 부과하고 1월 초과시 마다 10점을 가산하되 최고 120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점이 30점 미만이라도 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점수는 누산점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례 8]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만료일(법령 개정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에는 유효기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 보아도 됨)이 '93. 1. 5까지로 되어 있으나 생업에 바빠 미처 적성검사일자를 알지 못하다가 '93. 4. 1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어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 면허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이므로 범칙금 15,000원과 면허정지 30일간의 처분을 받는다.

라.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중, 감경과 가산

누산점수나 처분별점에는 변동이 없고 상습적인 위반 및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중하거나 면허증 반납, 지연으로 가산하는 경우, 교정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로 단지 정지처분 집행일수만 감경, 가중,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정교육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일수의 감경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 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표 6>과 같이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한다.

<표 6> 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감경기준표

교정교육 시험성적	감 경 일 수
80점 이상	20일 감경
60점 이상 80점 미만	15일 감경
60점 미만	10일 감경

특히 '92년 하반기 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별점이 30점 이상이 되는 운전자는 교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교정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가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기간만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별점 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별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별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을 하지 않는다.

② 상습 위반자 및 사고자에 대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중

면허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회수(이미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 개시일이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라 <표 7>과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③ 면허증 반납 지연으로 인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 지연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표 7>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가중기준표

과거 1년 이내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회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중
없 음 .	없음(당해 처분별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 회	10일 가산(당해 처분별점일수+10일)
2 회	20일 가산(당해 처분별점일수+20일)
3회 이상	30일 가산(당해 처분별점일수+30일)

다만,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지처분 기간을 가산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나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사유로 기간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함이 입증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일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 국외에 체류 중인 자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자
- 군 복무 중이거나 사회 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 등으로 인한 사유란
- 주소지 변경 신고를 법정 기간인 14일 이내에 하였으나 그 주소지 변경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통보지연 및 누락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통지가 늦게 도착했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때
- 관계 공무원의 사무 착오로 행정처분 통지가 늦게 도착했을 때
- 기타 면허증의 반납 지연이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지연 일수를 가산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를 말한다.

또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성검사시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때에 그 면허증을 회수하고 그 면허증

을 회수한 날로 부터 집행한다.

[사례 9]

S씨는 고속도로 갓길운행으로 '94. 1. 1.부터 1. 30. 까지 3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 '94. 2. 10.에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94. 5. 5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중상 2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설]

신호위반 15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0점, 사고 결과에 따른 별점 30점(중상 2명)등 처분 별점이 55점으로 55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94. 5. 5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으므로 10일을 가산하여 6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교통사고로만 별점이 30점 이상이므로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받아야만 면허정지 처분 만료일에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례 10]

처분 별점이 40점이 되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자 경찰서장이 대상자에게 '93. 10. 25까지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94. 1. 3에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해설]

면허정지 처분일수 40일에 집행 지연에 따

른 가산 일수 30일(지연 일수 71일의 2분의 1은 36일이지만 단수 불산입에 따라 30일만 가산)을 가산하게 되어 면허증을 반납한 '94. 1. 3. 부터 7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마. 면허증 등의 반환

정지처분 집행이 종료하는 날 보관하였던 면허증은 본인이나 그 가족의 반환 요청시 반환하며 반환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으로 한다.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반환하며 이 경우 면허증 등을 반환한 때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사례 11]

면허정지 처분이 끝나는 날이 '94. 1. 2인 경우 면허증은 언제 반환 받을 수 있는가?

[해설]

'94. 1. 2.은 연휴기간이 끝나는 날로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93. 12. 31.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반환을 받으며 반환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므로 1월 1일 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Ⅲ. 결 론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자신의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운전면허 점수제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산을 해 보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집행일수를 가산받지 않고 감경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사고·무위반을 하였을 때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앞장서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겠다.

2천년대 우리경제 품질로서 승부걸자